

---

#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

---

2024. 3. 19.



# I. 추진 배경

## 1 국제동향 및 시사점

- 글로벌 공급망 녹색전환 추세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확대 등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

< 참고 : 탄소중립 관련 국제 규범 동향 >

- [파리기후협약('15)] 협약당사국(195개국)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
- [EU CBAM('23~)] 수입 제품(철강, 시멘트 등)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
- [기후공시] EU 공시기준(ESRS) 승인('23.12),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('24.3)

- 탄소배출 규제의 무역장벽화에 따라 탄소중립은 기업의 단순한 비용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

- 글로벌 녹색시장은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팽창

※ 환경산업 0.86조 달러('07)→1.3조 달러('21)(EBI, '22), 신재생에너지('22년, 1.1천조 원 규모, 연평균 16.6%↑), 탄소중립 기술에 '25년까지 매년 2조 달러 투자 예상(맥킨지, '21)

< 참고 : 글로벌 녹색투자 동향 >

- [EU] '30년까지 녹색분야 총 1조 유로(약 1,400조 원) 투자 선언
- [日] IoT, AI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능형 환경기술개발을 중점전략으로 추진
- [중동] 과거 석유생산국들이 세계 수소시장 주도(사우디, 세계 최대 그린수소 플랜트 계획)

- 특히,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미래 자원 확보수단으로 폐배터리(연평균 7.6%↑), 폐가전(연평균 14.3%↑) 등 순환경제 시장 급성장

※ 순환경제 시장은 '22년 440조 원→'26년 93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(딜로이트, '23)

- 국내 녹색시장 규모는 34조 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2% 수준이나,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도입으로 국내 녹색투자 수요 증가 기대

⇒ 산업 전반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위해 민간 녹색투자 유인 확대 필요

⇒ 녹색 新산업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최적의 시기

## 2 그간의 성과 및 한계

### 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Taxonomy) 적용 확대 필요

- (성과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(‘21.12월)으로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했으며, 녹색채권,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에 적용

#### < 녹색분류체계 적용 금융상품 >

구분	주요 내용	'23 지원실적
녹색채권	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하여 녹색채권 발행시 이자비용 지원	4.63조
녹색자산유동화증권	단독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및 이자비용 등 지원	1,555억

- (한계) 금융기관 전문인력 확보 곤란, 높은 외부 검토비용 등으로 채권 외 금융상품에 대한 적용이 아직 부족한 실정

### □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

- (성과) 글로벌 환경공시 대응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(안) 마련(‘23), 중소·중견기업 대상 ESG 컨설팅 지원(‘23년 92개사)
- (한계) 환경공시 대응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녹색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, 기업·투자기관은 전문성 부족, 그린워싱 리스크 우려 등으로 투자에 소극적

### □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공급 확대 필요

- (성과) 녹색분야 민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민·관합동 펀드 조성,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융자, 이차보전 공급 등 마중물 역할 수행  
※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775억원 조성, 융자 3,610억원, 이차보전 2.8조 대출규모 지원
- (한계) 녹색 강소기업은 자금절벽에 직면하는데 반해, 금융권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 수요·공급의 mismatch 빈발

### □ 배출권거래제 적극적 녹색투자 유도에 한계

- (성과) 온실가스 多 배출업체의 관리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(‘15) 하여 기업의 감축 유인 제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- (한계) 시장여건에 따른 배출권 가격하락 등으로 적극적 감축 유도에 한계

## II. 녹색투자 확대방안

### 목표

녹색투자 활성화를 토대로  
저탄소 경제·사회로의 전환 가속화

### 추진 방향

- ◆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·제도 등 기반 공고화
- ◆ '27년까지 총 30조원 녹색시장 자금 공급

#### 1.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

-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
- 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

#### 2. 녹색투자 기반 조성

- 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
- ② 제도·인센티브 마련
- ③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
- ④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

#### 3.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

- ① 녹색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
- 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 공급

#### 4.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

- 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
- ②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
- ③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시장 도입

### Ⅲ. 세부 추진 과제

####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

- [기준 고도화] 국내 여건 고려하여 4개 환경목표 일부 개정
- [적용 확대] “채권 → 여신 → 공시 → 주식펀드” 점진적 확대 추진

##### 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고도화

- (일부개정)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\*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 개정(~'24.12월)
  - \* 기후변화 관련 2개 외 4개 환경목표(물, 순환경제, 오염방지, 생물다양성)를 대상으로 EU Taxonomy 환경위임법을 추가 제정('23.11월 관보 게재, '24년 적용)
- (고도화) 환경목표별 협의체\* 운영('24.6월~)으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3년 검토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 추진('25)
  - \* 4개 환경목표별 관계부처, 산업계, 금융권,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 논의 및 전과정평가(LCA)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 대상 현장의견 사전청취 병행

##### 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

- (여신)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「녹색여신 관리지침(금융위-금감원 협력)」 마련('24)

##### < 「녹색여신 관리지침」 관련 제안사항 >

- ▶ (단계적 적용) 공시 도입전까지는 시설자금 및 일부 운영비용 등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 녹색여신 적용
- ▶ (유인체계 마련) 녹색분류체계 부분 충족시의 처리방안을 담되, 배제·보호기준까지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·대출한도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필요
- ▶ (제도간 연계) 관리지침 내용에 따라 KTSS(금감원-시중은행), KTAS(기보)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의 적용 용이성 및 분류체계 정합성 지속 개선 추진

- (공시)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(가칭)\* 시범사업 추진(~'25)
  - \*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에서 기인하는 매출액, 자본지출, 운영비용 등

## ② 녹색투자 기반 조성

- [기준·제도 마련] 민간 녹색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판단 지원
- [전문인력 양성] 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·금융기관 전문성 제고
- [환경정보공개] 글로벌 정합성 갖춘 제도로 개편, 기업 공시부담 완화

### 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

- (배출량 산정)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 발간('24년)
- (산업분류 기준)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\*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 검토('24년)
  - \*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,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
- (전과정평가) 기초 화학물질, 철강제품,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, 수출 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\* 확대 구축 및 환경성적 산정방법\*\* 확대
  - \*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-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, 원료채취-생산-사용-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하여 목록화한 것 ('23년 307개 DB → '30년까지 1,050개 DB)
  - \*\*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 ('24.3월 25개 제품군 → '30년까지 120개 제품군)

### 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·인센티브 마련

- (CCfD)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(그린수소·CCUS\* 등) 도입 및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(CCfD\*\*) 운영 방안 검토
  - \* (CCUS) 발전소,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·활용·저장하는 기술
  - \*\* (CCfD) 기업이 혁신 저탄소 기술 도입 시,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지원제도
- (재생원료 사용)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시행('24년)하고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 부여('25년)

## □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

- (적합성판단 교육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·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·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 완화
  - ※ 금융기관/기업/외부검토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
- (ESG 교육)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\* 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- \* 전과정 평가,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한국형 녹색분류체계, 공급망 실사, CBAM 등

## □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\* 개편

- \* 환경부는 '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·기관 등의 환경정보(녹색경영전략, 온실가스·환경오염 배출량 등)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 유도
- (방향)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(ISSB, ESRS)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하여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

- ▶ (ISSB :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) IFRS(국제회계기준) 재단 산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, 일반 및 기후분야 공시기준 최종안 발표('23.6)
- ▶ (ESRS :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)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'23.12월 승인, '25년부터 단계 적용)

- (주요 내용) △핵심정보(탄소배출량,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) 위주로 항목 개편, △유형분류 단순화, △공개 시점 조정(12월→8월) △법인단위 공개 전환
- (단계적 적용)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, 기업 특성(상장사 여부 등)·규모 등 반영하여 단계적 개편 적용\*
  - \* 타 제도 통해 이미 관리 중인 항목(예: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현황)은 유예 없이 바로 적용, 신규 변경 항목(재생에너지, Scope3 배출량 등)에 대해서는 유예 적용 및 기업 지원사업 병행
- (공시 연계) 'ESG 인프라 고도화방안'('22.12, 관계부처 합동)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 합의 → 단계적 연계 추진 필요

- ① 용어통일 : KSSB 기준/지침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제도 용어 조정
- ② 의무이행간주 : 기업이 기후공시 채널 혹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3자 검증을 받은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양 제도 간 의무이행한 것으로 간주
- ③ 공개항목 일치 : 장기적으로 공시제도간 의무화 항목·대상 정합성 확보

### ③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

- [녹색금융] 채권·여신 등 지원을 통해 녹색시장에 30조원 공급('24~'27)
- [자금공급] 녹색수출펀드, 녹색보증 신설 등 다각적 자금공급방안 마련

#### □ 녹색분류체계 적합 녹색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

- (녹색채권) '24년도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대상 이자비용 지원(76.8억원)으로 3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 창출
- (녹색자산유동화증권) 이자비용 지원 확대(60억원 → 136.8억원\*) 및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(기술보증기금) 추가  
\* '24년 신규 발행분(약 1,600억원 규모) 및 '23년 편입기업 2차년도 이자비용 지원
- (여신) 녹색분류체계의 활동·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\*을 통해 매년 2조('24~'27),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지속 공급  
\*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환경부와 금융기관(산업신한·농협·국민·수출입은행)이 우대금리 공동 지원

#### 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 공급

- (수출펀드)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 신설('24~'28, 4,000억 원)  
※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 인프라투자사업에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에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신설하여 정부 3,000억 원, 민간 1,000억 원 출자 예정
- (보증) “녹색산업 기술보증” 사업(기술보증기금 협업) 신설 및 유망기술 보유기업 대상 보증 규모 확대 추진('25~)  
※ 환경산업 영위 기업은 전체 산업 대비 4.97% 비중을 차지하고,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단계에서 소외('22년 환경기업의 기술보증은 전체 신규 보증 대비 2.4%에 불과)
- (스케일업)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\*를 조성하고, 투자 대상에 M&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 지원('24~)  
\*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(모태펀드) 조성시 단일 펀드가 아닌 성장단계(초기창업·사업화·스케일업)별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로 세분화 조성

##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

### □ [기본계획] NDC\*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

\* 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

### □ [금융상품 도입] 배출권의 간접투자 도입을 통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녹색투자 확대

#### □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('24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)

- (할당 강화)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, 부문·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\*할당 적용 확대 추진
  - \* (BM : Benchmark) 동일 업종 배출시설의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, 과거 배출량에 따라 할당하는 GF(Grand-Fathering) 방식 대비 기술진보를 유도
- (시장 활성화) 간접투자 기반 마련(배출권 연계 금융상품), 거래형태 다양화,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
- (기업 지원) 배출량 검·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경감

#### □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

-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\*하여,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 및 가격 변동성 완화 추진
  - \*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('23.9, 관계부처 합동)에 따른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(ETN, ETF) 출시 기반 마련('24~) 등

⇒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

#### □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시장 도입

- (위탁거래)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,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(배출권거래법 개정, '24.2)
- (선물시장)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\*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 마련
  - \* 미래의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매도·매수할 수 있도록, 장래 배출권 가격을 미리 확정

## IV. 추진 일정

◇ 금융위,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 적용확대, 공시 연계 등 협업

추진전략	추진 과제	협업 기관	'24	'25	'26	'27
1.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	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- ① 4개 환경목표 일부 개정	금융위, 산업부				
	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- ② 환경목표별 협의체 운영	금융위, 산업부				
	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 - ① 여신 적용	금융위	지침 마련	시범 적용		
	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 - ② 공시 연계	금융위		시범 사업		
2. 녹색투자 기반 조성	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- ① 배출량산정	금융위		기준 마련		
	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- ② 산업분류	통계청	분류 개정			
	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- ③ 전과정평가					
	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·인센티브 마련 - ① 탄소차액계약제도			시범 사업		
	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·인센티브 마련 - ② 재생원료 사용					

2. 녹색투자 기반 조성	③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- ① 적합성판단 교육					
	③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- ② ESG 교육					
	④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		개편안 발표	단계적 적용		
3.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	① 녹색분류체계 적합 녹색 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	정책금융 기관, 시중은행				
	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공급 - ① 수출펀드 신설		펀드 신설	투자		
	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공급 - ② 녹색산업 기술보증	기술 보증 기금	법 개정	보증 신설		
	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공급 - ② 스케일업 지원					
4. 배출권거래제 고도화	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- 제4차 기본계획 수립		계획 수립			
	②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	금융위	도입 검토			
	③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 시장 도입 - ① 위탁거래		시스템 구축	운영		
	③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 시장 도입 - ② 선물시장		도입방안 마련	시스템 구축	운영	